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「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」 소방청 훈령 제418호

◇ 제 · 개정 이유

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(훈령 제2조)을 재정비하는 한편, 디지털포렌식 수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장비의 설치·운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범죄증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- 가. 소방청 소관 법률을 관련규정에 포괄 명시함으로써 향후 소방청 소관 법률 제정에 따른 빈번한 훈령 개정 방지(안 제2조)
- 나.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련 장비의 설치·운영 근거 마련으로 디지털 수사 여건 조성(안 제14조)